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 協約上 利子支給規定의 適用範圍에 관한 研究

裴俊逸*

-
- I. 序論
 - II. 協約上 利子支給規定의 適用範圍
 - III. 傳統的 適用範圍와 이에 관한 論爭
 - IV. 適用範圍의 分析
 - V. 追加的 考慮事項
 - VI. 結論
-

I. 序論

CISG(이하, '協約'이라 칭함) 제74조는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원칙, 즉 '損害額의 完全回復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마치 상대방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와 같이, 피해당사자를 이(상대방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바)와 동일한 입장에 두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하에서 피해당사자가 실제 완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액은 물론 그 손해액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의 利子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대금지급이 늦어진 경우 채무자는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자금의 사용을 통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미지급된 채권자는 그 결과 손해를 입게 되므로 미지급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협약 제78조와 제84조 (1) 항은 피해당사자의 利子支給請求權을 인정하고 있다.

* 浦項 1 大學 國際通商情報科 專任講師.

제 78 조는 협약의 입법 역사상 각국 대표들간의 견해차이가 가장 심한 조항 중의 하나였다. 상세한 규칙을 개발하려는 다각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각국의 상이한 法的·技術的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연체된(in arrears)’ 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청구를 인정하는 기본적인 규정만을 남겨 두게 된 것이다.

이렇듯 제 78 조가 이자에 관한 세부사항 예컨대, 이자율 및 이자지급규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협약이 준거법으로 채택된 국제매매계약 하에서 재판관은 불일치한 결론에 도달하는 우를 벼하고 있다. 이는 협약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협약 제 7 조(협약의 해석원칙)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원이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 또는 임의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본고는 협약의 이자지급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II 장에서 협약상 이자지급규정의 적용범위를 개괄적으로 알아보며, III 장에서는 이자지급규정의 전통적 적용범위와 이를 둘러싼 여러 판례의 입장 및 법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본다. 나아가 IV 장에서는 협약상 이자지급규정의 적용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를 분석한다. V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VI 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맺고 있다.

II. 協約上 利子支給規定의 適用範圍

협약 제 78 조는 “어느 일방이 대금이나 또는 기타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제 74 조에 따라 회복이 가능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 금액에 대한 利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자지급청구에 관한 일반적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제 78 조가 구매대금에 대한 이자에 적용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同條는 또한 ‘기타 연체된 금액(any other sum that is in arrears)’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여기서 연체된 금액은 제 50 조에 따라 구매대금이 減額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償還金額은 물론 일방이 상대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¹⁾ 한편 매매계약이 解除되어 구매대금이 반환되는 경우에 있

1) C. Thiele, “Interest on Damages and Rate of Interest Under Article 78 of the

어 그에 대한 이자지급은 제 84 조 (1) 항²⁾에 규정되어 있다.

제 78 조에 제시된 이자지급청구를 위한 유일한 전제조건은 문제의 금액이 '연체되어(in arrears)'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조건이 다만 '기타 금액(any other sum)'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매대금의 지급시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 한편 이러한 조건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자는 그 금액이 支給滿期가 도래한 시점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⁴⁾

일정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급만기시점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한다는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둘러싼 가장 심한 논쟁은 同 논리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자(interest on damages) 지급청구시에도 적용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법학자들은 손해배상액이 確定 또는 約定(liquidated)되어 있는 경우 제 78 조에 의거하여 당해 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아 한다. 그렇지만 이자지급청구권이 不確定 損害賠償額(unliquidated damages)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판결로서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이전 기간의 이자 즉 불확정손해배상액에 대한 判決前利子(pre-judgement interest)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문제는 제 78 조가 손해배상액 자체에 적용되는가가 아니고 손해배상액이 제 78 조의 '연체된' 금액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⁵⁾

III. 傳統的 適用範圍와 이에 관한 論爭

1. 傳統的 適用範圍

보통법계를 포함한 법적 전통에 따르면, 판결전이자는 確定(約定)賠償額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ndobono Journal*, Vol. 2, 1998 p. 3.

2) CISG Article 84. (1): If the seller is bound to refund the price, he must also pay interest on it, from the date on which the price was paid.

3) C. Thiele, *op. cit.*, p. 5.

4) F. Enderlein & D.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Oceana 1992, pp.313~314.

5) C. Thiele, *op. cit.*, p.4.

(liquidated sum)에 대한 이자지급이 계약의 明示的 條件으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것이 당사자간의 거래과정에 기초를 두거나(based on the course of dealing between parties) 또는 거래관행(trade usage)인 경우에 한해서 청구될 수 있었다.⁶⁾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확정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상 지급만기된 금액에 대한 심각하고도 실질적인 논쟁이 있는 경우 판결전이 자는 청구될 수 없었다. 불확정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판결전이자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일정한 債務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자신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판결로서 결정되기 전에는 그 금액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급을 불이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⁷⁾

2. 傳統的 適用範圍에 相反된 判例

이렇듯 역사적으로 판결전이자는 확정손해배상액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견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례가 다수 등장하였다. *Busik* 사건과 *Ellmex* 사건에서 확정손해배상액과 불확정손해배상액 간의 전통적인 차이가 否認되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불확정손해액에 대한 판결전이자가 인정된 것이다.

Busik 사건⁸⁾에서 고등법원은 “불확정배상액에 대한 이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그 금액이 판결로써 확정되기까지 피고는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않된다는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진 금액을 피고가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원고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논쟁의 대상이 된 책임이 확정배상액에 대한 것 이던 또는 불확정배상액에 대한 것이던가를 막론하고 그러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한단계 더 나아가 *Ellmex* 사건⁹⁾에서 법원은 불확정손해배상액에 대한 판결전이자의 지급청구를 특별히 인정하였다. 법원은 “판결전이자의 지급을

6) A.G. Guest, *Benjamin's Sale of Goods*, 5th ed., Sweet & Maxwell, 1997, pp.832~834 ; J. Beatson, *Anson's Law of Contract*, 27th ed., Oxford, 1998, p.586.

7) R.N. Leavell, et. al, *Equitable Remedies, Restitution and Damages : Cases and Materials*, 5th ed., West Pub. 1994, pp.225~228.

8) *Busik v. Levine*, 63 N.J. 351, 307 A.2d 571(1973).

9) *Ellmex Constru Co., Inc. v. Republic Ins. Co.*, 202 N.J.Super. 195, 494 A.2d 339(App.Div.1985).

인정하는 衡平法上의 목적은 대금지급이 지연되지 않았더라면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금액의 상실을 보상하는 데 있다. 손해액이 확정되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는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평법이 해석되어져야 하며 따라서 판결전이자는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동일한 논지의 판례는 *George H. Swatek, Inc. v. North Star Graphics* 사건¹⁰⁾, *Meshinsky v. Nichols Yacht Sales, Inc.* 사건¹¹⁾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Delchi Carrier, SpA v. Rotorex Corp.* 사건¹²⁾에서는 협약의 관련조항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지면서 판결전이자가 인정되었다. 본 사건에서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당해계약의 준거법인 협약의 제 74 조¹³⁾에 의거 피고(Delchi)는 利益의 壓失(loss of profit)을 포함한 손해전액을 배상해야 함은 물론 제 78 조에 의거 판결전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¹⁴⁾

현재 보통법계의 제정법상 법원은 單利(simple interest)를 포함한 일정 채무 또는 손해액의 지급을命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이자에 관한 폭넓은 裁量權을 가진다. 利子率을 결정할 재량권을 가짐은 물론 이자가 채무 또는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될 것인가 그리고 訴訟原因(cause of action)이 발생한 날로부터 판결이전 일정 금액이 실제 지급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판결시점까지의 전기간을 대상으로 이자지급을 명할 것인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

10) *George H. Swatek, INC. v. North Star Graphics*, Superior Court of New Jersey, Appellate Division, 1991. 246 N.J.Super. 281, 587 A.2d 629. 미국 뉴조지오 등 법원은 피고 North Star Graphics는 원고 George H. Swatek, INC.에게 \$38,586. 84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함과 아울러 \$ 7,041.94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판결전이자를 인정한 바 있다.

11) *Meshinsky v. Nichols Yacht Sales, Inc.*, 110 N.J. 464, 478-79, 541 A.2d 1063(1988). 법정은, Pressler, Current N.J. Court Rules, 4:42-11을 근거로 하여, 소송이 제기된 시점과 소송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계산된 單利(simple interest)의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법정은 그러한 판결전이자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R. N. Leavell et. al, *op. cit.*, pp.227~228).

12) *Delchi Carrier, SpA v. Rotorex Corp.*, WL 495787(N.D.N.Y. 1994).

13) 협약 제 74 조는 “당사자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로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피해당사를 상대방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와 동일한 입장에 두는 ‘손해액의 완전회복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J.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1991, p.503; 吳元奭譯, UN統一賣買法, 三英社, 1998, p.462).

14) V. Behr, “The Sales Convention in Europe: From Problems in Drafting to Problems in Practice”, *Journal of Law and Commerce*, Vol. 17, 1998, pp.264~265.

진다. 원고는, 上記의 법원의 재량권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소송절차(proceedings) 개시 후 그러나 판결이전에 채무전액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단리(simple interest)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미 제기된 경우, 審理(hearing)이전에 청구금액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소송의 원인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렇게 지급된 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은 여전히 제정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액과 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채무가 지연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소송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지급되었다면 채권자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¹⁵⁾

3. 傳統的 適用範圍에 관한 論爭

전통적인 적용범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례가 다수 등장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공통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어떤 法域에서는 연체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다른 법역에서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분쟁중에 있을 경우에도 이자를 인정하고 있다.

협약 제74조에 제시된 '완전보상원칙'에 따르면,原告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자는 일정금액의 지급이 있어야 했던 날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다수의 법원이 이를 따르고 있으나, 어떤 법정은 그러한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대신 자국의 國內法에 의거함으로써 이자발생시점에 대한 상이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Foliopack AG* 사건¹⁶⁾에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상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정은 이자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契約解除時點으로부터 발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피고에게 通知한 날로부터 이자가 발생한다는 판결을 내린 법정이 있는가 하면,¹⁷⁾ 또 다른 법정은 피해당사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반이 있은 후 물품을 再賣却한 시점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판결내렸다.¹⁸⁾ 국제거

15) A. G. Guest, *op. cit.*, pp.832~834.

16) *Foliopack AG v. Daniplast S.p.A.* 24 November 1989(Switzerland).

17) ICC Arbitration No. 7331 of 1994.

18) ICC Arbitration No. 7565 of 1994.

래에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는慣行에 따라 결정된 날로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판시된 바도 있다.¹⁹⁾²⁰⁾

불확정손해배상액에 대한 판결전이자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학자들간에도 명확히 공통된 의견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만약 법원이 제78조를 ‘연체된 금액’이라는 용어 중심으로 해석한다면, 이자는 확정손해배상액에 국한되어 그 지급이 지연된 때 청구가 가능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Sutton은 “제78조의 해석은 법정이 ‘연체된 금액’이라는 용어에 해석의 중심을 두는지 또는 이자지급을 명함에 있어 자신이 속한 법계의 전통을 감안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前者, 즉 ‘연체된 금액’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78조를 해석하는 경우 이자는 확정손해액(liquidated damages)에 국한되어 그 지급이 지연된 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²¹⁾ Enderlein & Maskow²²⁾과 Honnold²³⁾ 역시

19) *Elastar Sacifa v. Bettcher Industries Inc.* 20 May 1991(Argentina)사건에서 법원은 국내법이 아닌 협약의 일반원칙을 언급했다고 보여진다. 협약 제9조 (2) 항은 “...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했던 관행으로서 국제거래에서 그 당해거래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하는 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가 이를 그들의 계약 또는 계약의 성립에 당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관행과 관습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정은 결국 협약의 일반원칙에 의존하지 않은 채 아르헨틴(원고국)의 국제사법에 의거 미국(피고국)의 Ohio주법이 적용되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국내법에 따라 최종판결을 내렸다(P. Koneru, “The Intern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An Approach Based on General Principles”, *Minnesota Journal of Global Trade*, Vol. 6, 1997, pp.118~119).

20) 이렇듯 이자발생시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는 매도인이 계약에 일치하는 인도를 행하였음이 전제로 한다. 불일치한 인도를 행한 경우, 매도인은 분명 인도시점으로부터 발생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Marque Roque Joachim v. La Sarl Holding Manin Riviere* 26 April 1995(France)사건에서 법정은 매도인이 물품상의 하자를 치유한 날로부터 이자지급을 명하였다(*ibid*, pp.118~119).

21) J.S. Sutton, “Measuring Damag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hio State Law Journal*, Vol.50, 1989, p.750.

22) Enderlein & Maskow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라는 공식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이자는 그 금액이 지급만기가 된 시점으로부터 산정되어야 한다. … 그 금액은 확정되어(liquidated) 있어야지만 지급만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손해배상액으로서의 이자가 산정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F. Enderlein & D. Maskow, *op. cit.*, pp.313~314).

23) Honnold는 “이자는 전통적으로 확정배상액의 지급지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은 제78조의 ‘연체된 금액’이라는 용어의 기초가 되었으며, 따라서 제78조는 계약위반의 결과 발생한 결과적 손해의 보상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제76조에 의거 時價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J.O. Honnold(1982), *op. cit.*, pp.424~425; A.H. Kritzer,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4, pp.619~620).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불확정손해배상액에 대한 판결전이자를 인정하려는 것이 최근 법학자들의 추세이다. Sutton은 "... 이자는 CISG 하에서 확정손해액은 물론 불확정손해액(liquidated as well as unliquidated damages)에 대해서도 지급청구가능한 것으로 된다."고 언급하였으며,²⁴⁾ Honnold 역시 '契約에 관한 第2次 Restatement(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U.S.C.))'의 제 354 조²⁵⁾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 바 있다.²⁶⁾

IV. 適用範圍의 分析

1. 適用範圍問題의 實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 78 조의 이자지급규정이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적용되는가의 문제는 동조가 손해배상액 자체에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이 '연체된 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제 78 조에 의거한 연체된 금액으로 간주되는가 그리고 결국 제 78 조가 불확정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문제가 제 7 조의 (1) 항과 (2) 항 중 어느 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가를 모색해야만 한다. 제 7 조 (1) 항은 불명료한 문제(unclear matters)에 관한 협약의 해석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편, (2) 항은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24) J.S. Sutton, *op. cit.*, p.750.

25) U.S.C. § 354. (Interest as Damages): (1) If the breach consists of a failure to pay a definite sum in money or to render a performance with fixed or ascertainable monetary value, interest is recoverable from the time for performance on the amount due less all deductions to which the party in breach is entitled. (2) In any other case, such interest may be allowed as justice requires on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just compensation had it been paid when performance was due.

26) Honnold는 "제 (1) 항에 대한 Comment c에 의거하여 이자는 이행금액이 분쟁중인 경우에도 당해계약의 외적 증거(evidence extrinsic to the contract)에 의해서 증명되는 경우 회복가능하며, (2) 항에서 이자는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재판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청구가능한 것으로 된다. comment d에 의거, 이러한 이자지급규정은 결과적 손해(consequential loss)로까지 확대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J.O. Honnold(1991), *op. cit.*, p.527).

아니하는 문제(unsettled matters)에 관한 gap-filling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²⁷⁾ 간혹 어떤 이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자지급问题是 협약에서 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제7조 (2)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메꾸어야 하는 간격(a gap which should be filled)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²⁸⁾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제78조는 예컨대 特定의 이자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자율에 관한 한 분명 간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조가 적어도 '기타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비록 그 표현이 모호하지만, 불확정손해배상액에 대한 이자지급인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간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불확정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이자지급청구를 인정할 것인가는 제7조 (1) 항의 해석의 문제인 것이다.²⁹⁾

2. 適用範圍의 分析

제7조 (1) 항은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협약의 國際的인 성격과 또한 그 적용상의 統一性 및 국제거래에 있어 信義의 遵守를 增進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기초적 방법은 원문에 충실하여 해석(textual interpretation)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협약의 目的, 立法歷史 그리고 초안자들의 意圖가 감안되어야 한다.³⁰⁾

어떤 이는 제78조의 '연체된 금액'이라는 원문의 용어에 논의의 중심을 두어 손해배상액이 지급만기시에 확정(liquidated)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배상액에 대한 이자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³¹⁾ 그렇

27) CISG Article 7.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2) Questions concerning matters governed by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expressly settled in it are to be settled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n which it is based or, in the absence of such principles, in conformity with the law applicable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28) E.C. Schneider, "Consequential Damage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alysis of Two Deci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Law*(1995), p.615, p.646 ; C. Thiele, *op. cit.*, p.5.

29) J.O. Honnol(1991), *op. cit.*, p.527 ; C. Thiele, *op. cit.*, p.5.

30) C. Thiele, *op. cit.*, p.6.

31) E.C. Schneider, *op. cit.*, p.647.

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비록 지급되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손해배상액에 대한 청구는 여전히 일정 '금액(sum)'에 대한 청구인 것이다. 계약의違反이 있는 경우, 위반당사자는 상대방이 실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만 한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그 배상액은 '연체된 (in arrear)'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불확정손해액에 대한 제78조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문에 충실히 해석함은 바람직하지 않다.³²⁾

한편, 법원은 국내법적 전통 및 규칙에 의거하여 제78조를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³³⁾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협약 제7조(1)항의 統一性增進 목적으로 명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법원은 협약의 특정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결정함에 있어 국내법을 언급해서는 않되며, 제7조(1)항의 해석지침에 따라 통일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³⁴⁾

제7조(1)항의 지침인 '통일된 해석'에 입각한 제78조하에서의 손해배상액의 지급만기일이 언제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문의 입법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자는 전통적으로 확정배상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 왔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전통이 제78조의 '연체된 금액'이라는 용어의 기초가 되었으리라는 시각에서, 협약의 초안자들이 제78조를 불확정손해배상액에까지 확대적용할 의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입법역사상 협약초안자들이 이러한 전통에 기초하여 작업을 했다는根據는 어디에도 없다. 사실상, 초안자들은 불확정손해배상액의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입법역사를 통해서는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³⁵⁾

협약의 특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해 규정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78조의 목적은 명확하지 않다. 어떤 학자들은 제78조는 채무자의 不當利得을 방지하고자 의도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수취할 수 있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반면 어떤 학자들은 제78조의 목적은 채무자가 분쟁중인 금액을 보유함으

32) C. Thiele, *op. cit.*, p.6.

33) J.S. Sutton, *op. cit.*, p.750.

34) C. Thiele, *op. cit.*, p.6.

35) A. Rosett, "Critical Reflections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hio State Law Journal*, Vol. 50, 1989, pp.737~750; C. Thiele, *op. cit.*, p.6.

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³⁶⁾ 실질적인 목적이 兩者 중 어느 것이라고 할지라도, 손해액에 대한 이자는 계약위반 시점으로부터 회복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정확한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위반당사자는 여전히 위반시점으로부터 상대방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위반시점 이후 손해배상액이 실제 지급될 때까지 위반당사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금액으로부터 이득을 획득할 수 있어서는 않된다.³⁷⁾

이와 동일한 견지에서 볼 때, 만약 위반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상대방은 어떠한 손실도 입지 않았을 것이다. 손실은 계약이 위반된 순간 발생한다. 피해당사자는 비록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초손실이 발생한 때(when the initial loss occurs)로부터 일정금액의 使用利益을 박탈당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당사자는 계약이 위반되어 최초손실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손실에 대한 이자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제 78 조는 확정손해배상액 뿐만 아니라 불확정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마땅하다.³⁸⁾

이러한 결론은 제78조에 해당하는 가장 명백한 상황, 즉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할 때 보다 확실해진다. 국제거래에서 매우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대량인도는 종종 소규모 단위에서 수량부족이나 품질의 하자를 유발하기 쉽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금의 조정이 필요하다.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잔액은 합의된 또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확정액’이라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것은 곧 판결로써 정확한 조정액이 선고되기 전에는 매수인은 이자도 없이 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조정협상에서의 비타협적 태도와 소송에서의 지연전술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제 78 조의 제정목적을 심히 해하게 될 것이다.³⁹⁾

36) J.O. Honnold(1991), *op. cit.*, p.525.

37) C. Thiele, *op. cit.*, p.7.

38) *ibid.*, p.7.

39) J.O. Honnold(1991), *op. cit.*, p.527; 吳元奭 譚, 前揭書, p.485.

3. UNIDROIT 원칙의立場

UNIDROIT 원칙은, 협약과는 달리, 拘束力 있는 협약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國際商事契約에 관한 일반원칙을 집적하여 再記述(restatement)할 의도로 제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⁴⁰⁾ 따라서 동원칙의 제정작업에 참가한 대표들은 자신이 속한 법계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문들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협약상의 모순점과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혹은 메꿔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UNIDROIT 원칙을 지목하고 있다.⁴¹⁾

Lookofsky는 불확정손해배상액에 대한 판결전이자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로, "... 만약 이자가 확정배상액에 대해서만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가 CISG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제 74 조의 일반 원칙 즉 손해액의 완전회복의 원칙에 근거하여 해결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협약과 동일한 근본이념하에 제정된 UNIDROIT 원칙의 제 7.4.10 조를 들어 이자는 손해발생시점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²⁾

UNIDROIT 원칙 제 7.4.10 조(손해액에 대한 이자)는 "달리 합의한 바가 없는 경우, …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이자는 불이행시점으로부터(from the time of non-performance)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손해액에 대한 이자가 어느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보통 불이행이 발생한 시점에서는 아직 손해액은 金錢的 單位로 산정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본 조는 실질적으로 손해발생시점을 이자발생의 기산시점으로(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accrual of interest) 간주하면서, 불확정손해배상액

40) 梁暎煥, 徐正斗, 國際貿易法規, 三英社, 1998, p.229.

41) A.M. Garro, "The Gap-Filling Rule of the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Sales Law: Some Comments on the Interplay between The Principles and The CISG," *Tulane Law Review*, Vol.69 1995, pp.1155~1156; M.J Bonell,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CISG—Alternatives or Complementary Instruments?", *Uniform Law Review*, 1996, pp.11~13; 裴俊逸, 國際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比較法的研究, 貿易商務研究 第12卷, 1999. 2, pp.85~106.

42) J. Lookofsky, *Understanding the CISG in Scandinavia*, Copenhagen, 1996, p.162.

에 대한 판결전이자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경영인으로서 자신이 보유한 금액을 無價値하게 放置해 두지 않는 것이 현실인 국제거래에 가장 적합한 규정이라 하겠다. 사실상, 손해배상액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불이행당사자는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금액의 사용을 통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당사자의 자산은 손해발생시점으로부터 감소된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피해당사자에게로 移轉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⁴³⁾

V. 追加的 考慮事項

1. 不可抗力的 狀況과 利子支給義務의 免責

거의 모든 법계에서는 당사자가 不可抗力的 狀況(force majeure)과 같은 자신의 統制를 벗어난 障碍(impediment)에 기인하여 자신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免責을 허용하고 있다.⁴⁴⁾ 협약 역시 제 79 조 (1) 항에서 “당사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점과 계약체결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 장애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는 자신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제 79 조 의거 면책되는 경우에 있어서 조차 이자지급의무가 強制的(mandatory)인 것인지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어떤 주장에 의하면, 이자는 일반적인 의무(general obligation)이므로, 예컨대 매수인국이 해외통화로의 지급에 대한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

43) UNIDROIT원칙 제 7.4.10 조의 Official Comment.

44) 계약체결 후에 장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각국에서는 이행불능(impossibility), 불가항력(act of god, force majeure), 프러스트레이션(frustration), 전제조건의 상실(failure of presupposed conditions), 사정변경의 원칙(행위기초론, 불예견론)이라는 이름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비록 명칭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모두 계약체결시 예측하지 못하였고 통제도 불가능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물리적 또는 법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위반당사자를 면책시키고 있는 것이다(李海一, 國際物品賣買上 當事者의 契約違反 및 그 救濟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7, 6, p.168).

는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종료된 이후 매도인이 여전히 대금지급청구권을 가진다면, 그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존재한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이 지연된 모든 기간동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이자는 손해액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자지급책임은 불가항력적 상황하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들 상반된 주장 모두 협약하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前者의 경우, 제78조와 제79조의 관계를 잘못해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79조(1)항은 불가항력적인 상황하에서는 제78조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 모든 의무(any of the obligation)로부터 면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後者의 경우, 협약은 이자지급의무를 손해배상의무와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관계로,⁴⁵⁾ 이자가 손해액의 일부라는 전제하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협약에 의거하면, 일시적인 금지조치가 종료된 이후, 매수인은 그 금지조치가 종료된 날 즉 지급의무가 再開된 날 (from the date the obligation to pay resume)로부터 발생된 이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⁴⁶⁾

한편, UNIDROIT 원칙은 협약과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동원칙 제7.4.9조(1)항은 “일방당사자가 지급만기가 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당사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대금지급만기시점으로부터 실제 지급된 시점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그러한 불지급이 면책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러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official comment에 의하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예컨대, 불이행당사자가 새로운 외환규제조치의 발효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지급해야 했을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속 수취함으로써 未支給의 결과 이익을 얻게 되고, 이를 이유로 한 보상차원에서 이자는 여전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45) 이자와 손해배상간의 관계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제78조를 제74조로부터 분리 독립시켰다는 점과, 제78조상의 규정 “… 제74조에 따라 회복이 가능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해합이 없이, …”를 감안할 때 CISG는 손해배상책임과 이자지급의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 Ferrari, “Uniform Application and Interest Rates Under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ornell Review of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95, p. 8; C. Thiele, *op. cit.*, p.18).

46) P. Koneru, *op. cit.*, p.118.

2. 單利와 複利

연체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이 주, 월 또는 년과 같은 특정한 주기로 複利(compound interest)로 계산되어 미지급된 이자 위에 새로운 이자가 계속 누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⁴⁷⁾

어떤 국내법에서는 公共政策規則(rules of public policy)上 불이행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單利(simple interest)의 지급청구만을 인정할 뿐 복리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⁴⁸⁾ 현재 보통법계국가에서 법원은 제정법상 다만 단리의 지급을 명할 권한만을 가진다. 이에 비해 동법계하에서 중재인은 법원보다 넓은 범위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제정법상 중재인은 해당 상황에 합리적인 시점으로부터의 단리 또는 복리의 지급을 명할 권한을 가진다.⁴⁹⁾

협약과 UNIDROIT 원칙 모두 동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Honnold는 “이자액이 피해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비용(credit cost)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접근방식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Enderlein & Maskow는 “이자는 복리로 청구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것은 국제거래의 관습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⁰⁾

VI. 結論

협약 제 78 조는 이자지급청구에 관한 일반적 권리와 규정하고 있다. 同條에서는 지급이 ‘연체되어’야 함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곧 이자가 지급만기시로부터 발생함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둘러싼 가장

47) Bowles & Whelan, 45 *Mod. L. Rev.* 434(1982); Bowles & Whelan, 64 *Can. Bar. Rev.* 142(1986); Bowles & Whelan, 1 *Int. Rev. L. & Ec.* III(1981)(Honnold(1991), *op. cit.*, p.527).

48) UNIDROIT 원칙 제 7.4.10의 Official Comment.

49) A.G. Guest, *op. cit.*, pp.835~836.

50) A.H. Kritzer, *op. cit.*, p.619~620.

심한 논쟁은 同 논리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이자지급청구시에도 적용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법적 전통에 따르면, 손해액이 確定 또는 約定되어 있는 경우 이자지급청구는 가능하지만, 불확정손해배상액에 대한 判決前利子는 인정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견해와 상반된 판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법학자들 역시 대체로 불확정손해배상액에 대한 판결전이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제78조의 制定目的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전이자는 인정되어야 한다. 제78조의 목적이 채무자의 不當利得을 방지하는 데 있던지 또는 채무자가 분쟁중인 금액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있던지는, 적어도 동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한, 중요하지 않다. 그 어떤 목적하에서도 손해액에 대한 이자는 계약위반과 함께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이 귀속되기 시작한 또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가해진 시점으로부터 발생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불확정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판결전이자가 인정되어 마땅하다.

이러한 본고의 결론은 UNIDROIT 원칙에 의해 뒷받침된다. 초안작업과정에서 각국대표들의 의견차이가 심한 관계로 협약은 이자지급규정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동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남겨둔 반면, UNIDROIT 원칙은 제7.4.10조에서 적용범위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동조는 “손해액에 대한 이자는 不履行時點으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확정여부와는 무관하게 판결전이자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협약의 모순점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UNIDROIT 원칙이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을진데, 향후 각국법 원은 적어도 당해계약의 準據法이 협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불확정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이자지급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협약의 통일성증진 목적(제7조(1)항)에 부합할 것이다.

본고는 제78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이자율문제와 이자지급규정의 적용범위문제 중 後者에 국한하여 고찰하였다.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의 이자지급문제에 대하여 아

직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지 아니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이자율문제에 관해서도 별도의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參 考 文 獻

- 裴俊逸, 國際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比較法的研究, 貿易商務研究 第12卷, 1999.
- 梁喚煥, 徐正斗, 國際貿易法規, 三英社, 1998.
- 吳元奭譯, UN統一賣買法, 三英社, 1998.
- 李海一, 國際物品賣買上 當事者의 契約違反 및 그 救濟에 관한 研究,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7, 6.
- Beatson, J., *Anson's Law of Contract*, 27th ed., Oxford, 1998.
- Behr, V., "The Sales Convention in Europe: From Problems in Drafting to
Problems in Practice", *Journal of Law and Commerce*, Vol. 17, 1998.
- Bonell, M.J., "The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and CISG—Alternatives or Complementary Instruments?",
Uniform Law Review, 1996.
- Enderlein, F. & Maskow, D., *International Sales Law*, Oceana 1992.
- Ferrari, F., "Uniform Application and Interest Rates Under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ornell Review of the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95
- Garro, A.M., "The Gap-Filling Rule of the UNIDROIT Principles in
International Sales Law: Some Comments on the Interplay between
The Principles and The CISG", *Tulane Law Review*, Vol. 69 1995.
- Guest, A.G., *Benjamin's Sale of Goods*, 5th ed., Sweet & Maxwell, 1997.
- Honnold, J.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Kluwer 1982, 1991.
- Koneru, P., "The Intern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 Approach Based on
General Principles", *Minnesota Journal of Global Trade*, Vol. 6, 1997.
- Kritzer, A.H.,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
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uwer,
1994.

- Leavell, R.N. et. al, *Equitable Remedies, Restitution and Damages; Cases and Materials*, 5th ed., West Pub. 1994.
- Lookofsky, J., *Understanding the CISG in Scandinavia*, Copenhagen, 1996.
- Rosett, A., "Critical Reflections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hio State Law Journal*, Vol. 50, 1989.
- Schneider, E.C., "Consequential Damages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alysis of Two Decis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Law*, 1995.
- Sutton, J.S., "Measuring Damag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hio State Law Journal*, Vol.50, 1989.
- Thiele, C., "Interest on Damages and Rate of Interest Under Article 78 of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ndobono Journal*, Vol.2, 1998.

ABSTRACT

A Study on the Sphere of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for Interest under the CISG

Bae, Jun Il

As to the sphere of application, Article 78 CISG undoubtedly applies to interest on the purchase price. Furthermore, the provision also applies to "any other sum that is in arrears". This language has been interpreted to encompass expenses that one party had on behalf of the other as well as reimbursements when the purchase price is reduced according to Article 50 CISG.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language also extends to claims for damages.

Legal scholars seem to agree that one has a right to interest on damage claims under Article 78 if the amount in question has been liquidated vis-à-vis the other party. Whether this right to interest also applies to unliquidated sums, is controversial, however.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of Article 78, we could find the fact that regardless of whether the exact amount of damages has been specified yet, the breaching party still owes compensation to the other party from the time of the breach and, accordingly, the non-breaching party should be entitled to interest payments on the loss from that time. Consequently, Article 78 applies not only to liquidated but also to unliquidated damages.

Key Words : CISG, Article 78, Article 50, in arrears, liquidated damages, unliquidated damages, interest, prejudgement interest, simple interest, compound interest, gap-filling, *force majeure*, impediment